

예술인 보조금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문체부와의 논의

(현장 사례조사를 중심으로)

작성일 : 2025.08.28.

■ 일시/장소 : 2025년 8월27일(수) 10시/ 현대미술관 서울 2층 대회의실

■ 참석

- 추진위원회 : 공동대표단_박정의(서울연극협회 회장), 방지영(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ASSITEJ Korea 이사장), 안희철(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), 이자순(말모이연극제 축제위원장), 이종승(공연예술노동조합 위원장)
- 추진위원_남정숙(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, 추진위), 선옥현(한국극작가협회 6대 이사장), 이썬정석(한국민예총 사무국장)_8명
- 문체부 : 신은향 국장, 김진희 과장, 강승 사무관_3명
- 기관 :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류재수본부장,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곽은미본부장_2명

■ 방향성

- 현장과 맞지 않는 보조금법 적용 사례를 통해 개선 방향 모색
- 문제사례 취합내용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, 단기 및 중장기 한 해결책 마련

■ 개선방안 협의 결과

- 보조금법이 적용 안되는 **용역계약 형태로의 전환 검토**
 - 용역방식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통사업을 통해 상당 현장 동이가 이루어진 상태
 - 단기적으로는, 적용 가능한 사업 범위를 검토하여 시행하고, 중장기적으로는 예술 용역을 별도로 규정하는 코드 마련 필요.
 - ※ 현재, 일반적인 용역인 210-14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,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부의 SI용역 코드 260-02와 같은 별도의 예술 용역 코드 260-03의 신설 필요
 - 소액 지원을 2천 만원 이하로 하고,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방안 동시 검토

- ▶ 후속 조치 : 집중 논의 단위 구성하여, 9월 15일 전후 추가 논의 추진
- ▶ 해소 요소 : 가족 간 거래, 이윤 적용, 자부담금 미작용 등 예산편성자유성 가능
- ▶ 세부 논의 : 용역사업은 용역 제공자(업체)와 의뢰인(기업/기관)간 계약인 구조이나, 국가 보조금을 용역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안이므로 중간 단계인 2차 보조사업자가 필요해지는 구조이기에 추가 논의를 통해 집중 연구 필요

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법 제정을 위한 추진 위원회

- 자부담비 폐지에 대해 검토
 - 현행 대부분 자부담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있으나, 폐지 가능한지 재검토
- 과한 처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 이전의 조정기관 필요성
 - 대법원 판결 등 법적인 판단이 나온 이후에는 개선 가능성이 낮아짐
 - 예술인신문고 등 권리보장위원회의 필요성 절실

▶ 세부 논의: 본 사안은 중간 조정 단계로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, 예술인신문고 등 적절한 창구 활용과 그 이용에 관한 예술계 내부 및 문체부와의 논의 필요

- 회계 비용 의무화 폐지
 - 보조금법 상에 의무가 아니지만, 시행기관의 어려움으로 진행된 사안이나,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이라면 폐지 검토

▶ 참조 : 문체부에서는 최근 지속발생하는 산재에 따라 시급한 의무는 산업재해보험 가입으로 판단하고 있어,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함

- 지방보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
 - 다른 주제로 개최 예정인 문체부의 지자체 과장급 회의 시 본 사안 전달
 - 추진위에서는 본 문제를 각 지자체에 일일이 요청할 수 없으므로 지방보조금이 중앙보조금 집행의 사례를 따르도록 문체부의 공동 노력 요청 함

▶ 참조 : 예술 용역 코드 260-03이 신설될 경우, 빠르게 바뀔 수 있으나,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

■ 개별 사안 관련

- 극작가 협회 건
 - 법적인 조치가 결정된 단계에서 도울 방법이 희박하며, 초기 대응의 아쉬움이 남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

▶ 후속 조치 : 극작가협회의 존폐와도 관련 있는 사안이므로 지속 방안 모색

- 재외 외국인의 예술 활동 준비금 환수 건
 - 재외 외국인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간과한 지점을 포함하여 방법 모색

▶ 후속 조치 :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안 재검토 중

※ 아래 [참조]의 보조금법으로 인한 문제 쟁점 요약을 참조바랍니다.

[참조]

보조금법으로 인한 문제 쟁점 요약(통합)

작성일 : 2025.08.20.

-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계 34인은 지난 7월 1일 ‘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(이하 추진위)’ 를 발족시키고 현 정부를 향해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을 호소하며 성명서 발표 및 연대서명 진행
- 단체별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, SNS상에서 사례 공유하는 가운데 8월 20일 현재까지 누적 1,970여 명이 연대 서명 이어감
- 구체적 사례 취합(7월 27일~8월 2일)을 진행한 후, 8월 4일 3시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아래와 같이 쟁점을 취합함

■ 방향성

현장과 맞지 않는 보조금법 적용 사례를 통해 개선 방향 모색.

■ 주요 쟁점 유형

- 예술창작 환경의 특이성, 다양성, 자율성 불인정
- 보조금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사업 시행처의 문제
- 국고보조금(중앙정부)과 지방보조금(지자체)의 연계 및 비연계성
- 기재부의 지적에 따른 사업 운영방식의 경직과 변형

■ 개선 사항1(*주요 사례 중심으로)

- 기초예술을 국가계약법 등에 준하여 규제하는 문제
 - 사업 정산 종료 이후, 내부거래 및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다는 기재부의 지적에 따라 환급을 요구한 사례 발생
 - 사업 이행 단체 이사의 자격을 가진 예술인이 본 사업에서 사업자의 이름으로 예산을 지급받은 경우, 정산종료 후라도 이해충돌로 환급 명령받음
 - 현재, 사업비의 항목 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가급적 수용비로 사용토록 사업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안받음, 그중 많은 부분이 사례비임.

현재까지 파악한 관련 법령)

#보조금법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) #보조금법 시행령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#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#국가계약법 #지방보조금법 #공공재정환수법

-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을 2020년과 2022년 각각 심의 후, 300만원씩 지급 받았으나, 기재부로부터 최초 공모내용(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)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 명령받음

○ 사업 시행기관의 판단에 따른 항목 규제

- 사례비 지급의 부당함을 막고자, 사업목표에 부합되는 지출조차 사용금지한 사례로서 출판 관련 사업이지만 공모단계에서 인쇄비용 사용을 금함
- 매년 사업 시행 시 집행하면 안 되는 항목이 빈번히 변경되어 혼란 가중
 - ※ 특히, 지방보조금의 경우 현장 논의 없는 집행 불가 항목 증가

○ 가족 거래 등 불인정

- 대표의 아내가 출연자이고 단원인 경우인데, 환수 조치 요구를 받아 항의 끝에 사유서 작성 후 마무리됨
-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가족 예술인의 경우, 동일 사업에 지원 못 받게 하고 있으나,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적 오류임
- 프로젝트 전체를 운영했으나, 사업단체 대표와 가족 강사는 사례비 못 받음
 - ※ 가족형 단체, 가족형 프로젝트 구성원이 지속 증가

○ 제작 방식의 특수성 불인정과 총사업비의 균형만 맞춘 예산 편성 구조

- 사업 신청자이며, 사업이행자인 당사자의 사례비가 전체 사업운영비의 균형 대비 높다고 하여, 사례비를 낮추거나 사유서를 쓰는 등으로 조정된 사례
- 총사업비의 고른 편성을 심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, 실 집행과 무관한 균형만 맞춘 예산 편성과 부적합한 사업구조를 이루게 되어 편법을 유도케 함
- 자산취득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, 구매했을 경우 저렴한 예산임에도 대여료로 과다 지출하는 무리한 예산 사용 발생, 이는 ESG경영에도 부합치 않음

○ 자부담 10% 및 예치형 보조금 교부·집행의 문제점

- 기초예술지원임에도 사전 예치형 사업이기에 포기하는 예술단체 다수 발생
- 공연제작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받는 경우가 아님에도 자기부담금을 집행하는 부당함
- 최종 확정 사업비가 삭감됐음에도 최초 지원한 자부담으로 예산 편성하라는 요구
-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출과 편성의 문제
 - 최초공고 시, 건당 사업의 예산 범위가 정해진 상태이므로 신청자는 일반기준과는 다른 예산구조이지만, 예산 내에 몸집을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실정
 - 낮춰진 인건비 등은 참여 단체 및 개인의 재능 기부, 품앗이와 같은 형태 이기에 이미 자부담(업무별)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
- 사업의 특성상 자부담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도, 기재부의 지적에 따라 추

후 자부담을 부득이 넣을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내몰릴 가능성 높음

■ 개선사항 2 (*사례 중 공통사항)

- 이용자 편의가 아닌 통제를 위한 시스템인 이나라 도움의 문제점
 - 생소한 세무, 행정용어, 증빙 메카니즘 등을 이해해야 사용 가능한 시스템
 - 익숙해져야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어쩌다 접하는 예술인에게는 난관
- 기재부는 이나라 도움, 보탬이 등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적 지원 방향 제시는 없는지 아쉬움
-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과한 처벌규정
 -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임에도 발생하는 과한 예술인의 보조금법 처벌
※사업수행단체 : 부정수급액 환수(이자 5% 포함) 및 5년간 사업 수행 제한, 제재부가금 부과(최대 5배)/ 개인 : 벌금 및 5년간 지원금 사업 수행 제한
 - 예술인들이 제약된 예산 안에서, 특수한 구조의 사업을, 복잡한 행정을 통해 이행하다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징벌임에도 강력함
- 지방보조금 시행 규정 적용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
 - 특정 사업의 경우, 자부담이 없어진 반면, 시상식 관련 모든 항목(심사 회의, 간담회, 시상식 운영비) 사용을 불허함
 - 지역에 따라 예술인들의 강력한 압박이 가해질 때는 규정이 완화되기도 하기에, 이는 기준 법령이기보다는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됨.
- 모든 사업비 안에 회계비를 의무로 포함시키고 있으나, 이는 시행처가 부담해야 할 비용
- 기초예술에 해당하는 예술인 지원사업의 분리 필요성
 - 영리 & 비영리의 분리, 기초예술 & 상업예술의 구분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

■ 개선사항 3 (기타)

- 주관처는 개발과정이 지원의 핵심인 사업의 경우, 지적 재산권 보호의 주의 필요
 - 경기문화재단의 교육 연구 프로그램개발사업의 경우, 6개 단체에게 프로그램 기획안을 중심으로 2달 동안 공간을 연구하고 발표하게 한 사업에서, 최종단계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이 6개 단체 중 하나의 프로그램과 유사성이 매우 높았음. 모방된 부분에 대해 항의했으나,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

○ 예술인의 보조금 관련 법조계의 정보 미흡과 이해 부족

- 한국극작가협회 재판 과정 중 알게 된 현실로, 예술인의 보조금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적인 법조인(검사, 판사, 변호사 모두)이 없음.

※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 보조금 관련 법적 제도 개선 제안

① 문제 인식

- 예술인 보조금의 구조와 특수성을 이해하는 법조인이 부족함
- 검사, 판사, 변호사 모두 일반 보조금 기준으로 판단
- 예술 활동의 특성과 창작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도한 법적 책임 부과

② 제도적 개선 필요성

- 전문 재판부의 필요성
- 가정법원, 소년법원처럼 별도의 법원은 아니더라도
- 형사 재판부 내에 '예술·문화 보조금 전문부' 설치 고려
- 일반 보조금과 예술 보조금의 차이를 반영한 판단 가능
- 전문 자문기구의 법적 장치 마련
- 문체부, 예술위 등 관련 기관의 전문위원회가 재판부에 자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
- 검찰의 기소 전 단계에서도 예술위 등의 자문을 의무화하여 특수성 반영

③ 규정 정비 방향

- 예술 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규정 마련
- 창작 활동의 불확실성과 예술단체 운영의 유연성을 고려
- 보조금 집행의 경미한 오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 전환
- 예술인의 창작 자유와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